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 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 : 남궁역 의원

나. 의안번호 : 제2944호

다. 발의일자 : 2025년 8월 11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8월 14일

2. 제 안 이 유

○ 최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목원의 기능을 기존 수목유전자원의 수집·보존 및 연구 중심에서 시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확대하고자 함.

이에 따라 시장의 책무에 관련 시책 마련을 명시함으로써 수목원이 식물 전시·연구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·휴식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시장의 책무에 수목원을 통한 시민의 휴식과 여가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노력을 명시하여, 정책적 방향성을 강화함(안 제3조제3항 신설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 토 의 견

- 서울시는 '푸른수목원' 공원 전체 면적 중 일부 구역을 공립수목원 제1호로 등록('18년)하였고 '서울식물원'은 공원 내 주제원(온실, 주제정원)을 공립수목원 제2호로 등록('21년)하여 운영¹) 중에 있으며, 수목원의 운영·유지관리,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보존·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·산업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²)한 바 있음.
- 본 조례안은 시민의 휴식과 여가 증진을 위하여 수목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견 없으며, 수목원이 필수적인 식물 전시·연구 공간을 넘어 문화 및 휴식 공간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하여 수목원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확대 하려는 것은 적절할 것임.

¹⁾ 푸른수목원(구로구 항동 10-3 일대): 근린공원(도시지역권) 면적(200,956㎡) 중 103,354㎡ 등록 서울식물원(강서구 마곡동 812): 근린공원(도시지역권) 면적(505,350.9㎡) 중 105,731㎡ 등록

^{2) [}시행 2024. 9. 30.] [서울특별시조례 제9384호, 2024. 9. 30., 제정]

[붙임]

□ 서울식물원 조성 개요

○ 위 치 :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일대

○ 규 모 : 공원면적: 505,350.9 m²/ 수목원 등록면적 : 105,731 m²

○ 조성내용 : 도시형 식물원 + 호수공원

o 개 원: 2019. 5. 1. (임시개원: 2018. 10. 11.)

○ 주요시설

- 건 축 물 : 식물문화센터(지하2층/지상4층) 등 12개동, 연면적 총31,292.54m²

- 기타시설: 휴게·편의시설 9종, 어린이놀이시설 3종, 수경시설 4종, 육교 1종

○ 보유수종 : 5,508종, 2,262,731본

- 목본류 1,975종, 615,995본 - 지피초화류 3,533종, 1,646,736본

○ 위 치 도 (※수목원 구역: 빨간 점선)



□ 푸른수목원 조성 개요

○ 위 치 :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240번지 일대

○ 규 모 : 공원면적: 200,956m²/ 수목원 등록면적 : 103,354m²

○ 공 사 비 : 518억원(보상 및 공사)

○ 공사기간 : 2009. 10. ~ 2013. 5.

o 개 원 : 2013. 6. 5.(2018. 10. 수목원 등록)

○ 주요시설 : 숲교육센터 753.62m², 북카페 100m², 안내센터 40m² 등

○ 보유수종 : 1,776종, 494,763본

- 목본류 917종. 65.638본 - 지피초화류 859종. 429.125본

○ 위 치 도 (※수목원 구역: 빨간 점선)

